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◦ 제출일자 : 2000. 1. 18

◦ 회부일자 : 2000. 1. 18

3. 제안이유

지방세법의 개정(2000. 1. 1부터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, 또한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◦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

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,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

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상 45인 이하로,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

⇒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 하고

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 (안 제9조)

○ 차량 등 취득물건 이전시 취득세 이중 신고규정 삭제

차량·건설기계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 부터 30일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시는 전입하는 시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미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

전입지 시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(안 제19조 제1항)

○ 자가용자동차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

시설대여업용 자동차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(자가용)의 경우에는 등록명의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,

이를 삭제하여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 (안 제19조 제3항)

○ 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

-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'92년도에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'9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

-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50전에서
⇒ 2원으로 (안 제70조)

• 지하수는

-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
⇒ 200원으로

-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50원에서 ⇒ 100원으로
-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에서 ⇒ 20원으로 (안 제72조)
-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,000분의 1.5에서 ⇒ 1,000분의 2로 함. (안 제75조)

5. 검토내역 및 의견

-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
-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고,
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여
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취득신고를 한 취득세 과세 대상
물건은 30일전에 타 시·도로 이전하더라도 다시 취득 신고를
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,
- 여신 금융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한 비영업용 승용
자동차도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

- 지역개발세는 현실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
 -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50전에서
⇒ 2원으로
 - 지하수는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
100원에서 ⇒ 200원으로,
 -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
50원에서 ⇒ 100원으로,
 -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에서 ⇒ 20원으로 하고
- 지하자원의 채광된 광물가액의
1,000분의 1.5에서 ⇒ 1,000분의 2로 하려는 것으로써

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도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세 세입 전망 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